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0
----------	------

제출년월일 : 2011. .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가. 융자금 위주로 운영하던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4조의 7, 9, 10)
- 나.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④)
- 다.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③)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관계법령발췌 : 별첨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1.10.25 ~ 11.15.) 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충주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과 기관·단체를 말한다.
5.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고 충주시장이 인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시외의 자·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법 제46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로부터 받은 징수금
6. 국가나 시·도의 지원보조금

제3조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에 대한 과년”을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의 작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나 시·도의 지원보조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를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을 “자활공동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현물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계획의 집행 비용

제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신용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로, “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 나. 수급자의 생업자금

제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10. 수급자와 차상위자(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5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 · 운용)”을 “(기금의 관리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 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은 시금고 및 타 금융권에”를 “시 금고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를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로, “취급하도록 할”을 “취급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2. 기금의 결산
3. 대여금의 감면이나 결손처분
4.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제7조제4호 중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나 기관·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으로, “자활공동체 또는”을 “자활공동체,”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갈음할 수 있으며”를 “대신할 수 있으며,”로, “재정보증의 경우 재정보증인”을 “재정보증인”으로, “자 2인 이상으로 하되”를 “사람(2명 이상)으로 하되,”로, “재산가액이”를 “재산가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승인)”을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를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 세부지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은 삭제한다.

②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은 임대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임대계약만료 후 3개월 까지 상환하도록 하되, 계약연장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개인: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2. 기관·단체·법인: 7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 를 적용한다.

④ 개인 창업자의 사업자금 대여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만 지원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대여자금을 일시에 상환 할 수 있다.

1. 개인·단체·기관 등이 파산·해산·해체되었을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 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 법」을 준용하여 재산의 압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 중 “경과하여”를 “지나”로, “기한 내”를 “기한까지”로, “아니한”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제12조 중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여”를 “이전에는 어 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대여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이차보전)”을 “(이자 차액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4항에 의한”을 “대 여받았을 때에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에서 이 를 보전 할”을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하여 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차보전 받”을 “이차를 보전받”으로, “해당되는”을 “해당할”로, “중지 또는”을 “중지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80일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를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를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협의체의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중 “규정하지 아니한”을 “정하지 않은”으로, “관하여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관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충주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충주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u>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u></p>	<p><u>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u></p>
<p><u>4. “지역자활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u></p>	<p><u>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과 기관·단체를 말한다.</u></p>
<p><u><신 설></u></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충주시 출연금</u> <u>2. 충주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u> <u>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u> <u>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u> 	<p><u>5.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고 충주시장이 인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체를 말한다.</u></p> <p>제3조(기금의 조성) ----- --- 각 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시외의 자·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u> <u>2.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u> <u>3.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u> <u>4.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u>

현 행	개 정 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법 제46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로부터 받은 징수금
6.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적립금	6. 국가나 시·도의 지원보조금
7.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에 대한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	7.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의 작년-----
8. 국가 또는 시·도 지원보조금	8. 국가나 시·도의 지원보조금 제4조(기금의 용도) ----- ----- 사 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 사 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u>자활공동체</u> 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 ----- <u>자활공동체의</u> ----- -----
2.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또는 현물대여	2.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현물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의한 지역자활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계획의 집행 비용
4. 「지역신용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

현 행	개 정 안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 -----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나. 수급자의 생업자금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7.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체납액 정리에 따른 비용 등	8. 자활사업 연구 · 개발 ·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 설>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10. 수급자와 차상위자(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하게 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 외로 한다.</p> <p>② 기금은 시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p> <p>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p> <p><신 설></p>	<p><u>보험료 지원</u></p> <p>제5조(기금의 관리와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 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p> <p>② 시금고 등의 -----.</p> <p>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 취급할 -----.</p> <p>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 · 의결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 ----- 운영-----

현 행	개 정 안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2. 기금 결산보고	2. 기금의 결산
3. 대여금 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대여금의 감면이나 결손처분
4.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에 관한 사항	4.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
5. 그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제7조(지원대상) 기금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지원대상) ----- ----- ----- ----- 각 호- -----.
1. · 2. (생 략)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1. · 2. (현행과 같음) 3.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4. ----- 위한 연구 -----
제8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제4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제8조(지원신청) ①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나 기관·단체는 시장에게 신청

현 행	개 정 안
<p><u>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② <u>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u></p>	<p><u>하여야 한다.</u></p> <p>② <u>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u> ----- ----- ----- ----- ----- ----- <u>자활공동체, -----</u> ----- ----- ----- ----- <u>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u></p>
<p>1. ~ 4. (생 략)</p> <p>5. <u>기타 사업관련 입증자료</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의 -----</u> ---</p>
<p>③ <u>제2항제3호의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을 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으로 1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2인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이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u></p>	<p>③ <u>-----</u> ----- ----- <u>대신할 수 있으며, -----</u> <u>재정보증인-----</u> ----- ----- <u>사람(2명 이상)으로 하되, -----</u> <u>재산가액으로 -----</u></p>

현 행	개 정 안
<p>④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p> <p>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업이나 용도의 변경승인) -----</p> <p>-----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p>
<p>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p> <p>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거 사업규모, 사업계획,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p>	<p>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p> <p>① -----</p> <p>-----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p> <p>-----</p> <p>-----.</p>
<p>② 대여금액은 개인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단체·법인 등은 7천만원 이하로 한다.</p>	<p>②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은 임대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임대계약만료 후 3개월까지 상환하도록 하되, 계약연장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u>③ 대여기간은 단체·법인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개인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 점포임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개인·단체(법인)모두 1~2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계약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대계약연장 등)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u></p> <p><u>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이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u></p>	<p><u>1. 개인: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u></p> <p><u>2. 기관·단체·법인: 7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u></p> <p><u>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u></p> <p><u>④ 개인 창업자의 사업자금 대여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만 지원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적용한다.</p> <p>⑤ 제4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운영상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p> <p>⑥ (생 략)</p> <p>제11조(체납처분)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결정 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대여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단체·기관 등이 파산·해산·해체되었을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p>⑥ (삭 제)</p> <p>제11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재산의 압류를 결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1. 납부기한이 <u>경과하여</u>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u>기한</u>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u>아니한</u> 때	1. ----- <u>지나</u> ----- ----- <u>기한</u> <u>까지</u> ----- <u>않을</u> --
2. 제10조제6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0조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u>이전에</u>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여 받을 수 없다.	2.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 ----- ----- <u>이전에는</u> <u>어떠한 명목으로도</u> 다시 대여를 -----.
제13조(<u>이차보전</u>)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u>대출받은</u>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4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 <u>범위안에서</u>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u>이차보전</u>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되는</u> 때에는 이차보전의 <u>중지</u> 또는 이차보전	제13조(<u>이자 차액의 보전</u>) ① ----- ----- <u>대여받</u> <u>았을</u> 때에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4항에 따른 ----- ----- <u>범위에서</u> 이자를 <u>보전하여</u> 줄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이차를 보전받</u> ----- ----- <u>해당할</u> -----

현 행	개 정 안
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지나 ----- ----- -----.
<u>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u>	<u>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u>
<u>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 ----- 80일 이내----- -----. ② ----- ----- 기금운 영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 -----.</u>
<u>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u>	<u>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 -----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협의체의 심의 · 의결----- -----.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u>

현 행	개 정 안
<p>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 할 수 있다.</p> <p>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7조(준용규정) ----- 정하지 않은 ----- ----- 관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규칙」 ----- --.</p>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 12.28>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5의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5의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 12.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기금의 용도 개정내용)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9.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